

【 주간 이슈 】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김경환 전문연구위원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6.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실질적인 개정작업이 완료됨.
- 금번 개정 법률은 보험업 진입규제 완화,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그리고 보험상품 개발절차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는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해지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적 고려라고 하겠음.
 - 다만, 이러한 규제들이 형식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보험영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 법률은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파생상품 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자산운용 규제완화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금융위기 발생원인 등을 감안할 때 업무영역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율상품제도는 상품개발제도를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창의성·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됨.
 - 보험회사의 실질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감독의 강화보다는 상품개발능력의 제고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편, 공제사업 감독일원화, 보험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금융위의 보험사기 자료제출요청권 등은 보험업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됨.
 - 이러한 사항들은 금융업권 간 또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쟁점사항들로서 영역갈등이나 기관 간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존재하는 바,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논의 배경

- 2010.6.29일 정부제출안에 일부 의원발의안의 내용이 반영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개정작업이 완료됨.
 - 2005년 4월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지 5년 3개월, 2006년 10월 제1차 입법예고안이 공표된 지 3년 9개월, 그리고 2008년 11월 제2차 입법예고안이 공표된 지 1년 8개월만의 결과임.
- 보험업법 개정이 그 긴 작업 기간만큼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 개정 법률 역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이후 범세계적인 무역·투자의 자유화, 금융기관의 겸업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학계가 참여하여 2005년부터 1년여에 걸친 논의결과 2006년에 보험업법 개정시안이 제시됨.
 - 그러나 보험상품 개발절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자본시장법의 국회통과, 상법 보험편 개정작업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동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함.
 - 2007년에는 학계·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 자문팀이 구성되어 추가적인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의 3법이 통일적·체계적인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 12월 개정요강이 발표됨.
 - 그러나 이 또한 정권교체로 인한 금융정책의 궤도 수정, 관련 부처 간의 의견조율 등으로 11개월 만에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 보험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무위원회에서 1년여 간을 표류하던 중,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쟁점사항들을 제외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함.
- 본고에서는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사항, 그리고 향후의 법률개정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2.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

가. 진입규제 완화

□ (허가간주) 보험종목 허가 관련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허가간주 규정을 신설(\$4)

- 특정 종목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생명·손해보험의 전부를 허가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새로운 보험종목이 신설되더라도 추가적 허가 없이도 영위를 허용

□ (허가서류 간소화)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기초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만 제출토록 간소화(\$5)

- 허가신청 전단계에서 신청자가 필요 인력을 고용하여 복잡한 기초서류를 모두 작성토록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 (인력·물적시설 유지요건 완화)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업무의 일부를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인력·물적 시설을 구비할 의무를 면제(\$6①)

-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시 손해사정사 보유의무 완화 등

□ (보험종목 추가 시 허가요건)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업 신규진입 시의 요건과 보험종목 추가 시의 요건을 구분하고, 보험종목 추가 시의 요건을 완화(\$6③)

- 신규진입 시는 ①자본금, ②인력·물적시설,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④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및 도덕성을 심사하나, 종목추가 시는 ①보험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건전성, ②사업계획의 타당성, ③보험회사 및 대주주의 도덕성을 심사

나.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경영업무 체계 개선)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경영업무를 ①금융관계법률에서 허용한 업무, ②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③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 재구성(\$11)

- 이에 따라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등은 별도의 허가 없이 보험회사가 취급 가능하며, 신탁업 등은 해당 법률상의 인허가는 받되 보험업법상의 인가는 생략

□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열거주의(Positive)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하여 자유롭게 허용(§11의2)

- 보험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수업무는 사후 금융위의 제한·시정명령을 통해 규제

다. 판매채널제도 정비

□ (보험설계사 요건 등 정비)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로 일원화하여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으로 각각 구분하고(§83), 보험설계사의 결격요건과 등록취소요건을 정비(§84②, §86)

- 보험설계사 결격요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록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 등을 포함
- 보험설계사 취소요건과 업무정지요건에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가중 -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경우도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요건으로 모집에 관한 규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신설(§88②, §90②)
- 한편,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해서 보험회사 등이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85의2)

□ (보험설계사 교육의무 신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여(§85의2)

- 다만, 현재도 보험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재규정은 두지 않되,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통해 실효성 확보할 예정

□ (법인보험대리점 등의 규제 강화)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업무범위를 모집업무 중심으로 제한하여 업무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제고(§87의2, §87의3, §89의2, §89의3)

- 더불어,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주요 경영현황 및 불완전판매율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강화

- (보험계약자 구분) 보험계약자를 일반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로 구분하여 보호 수준을 차등화(§2)
 -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되, 보험 계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완화
- (설명 의무 신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상품 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95의2)
 - 또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시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 (적합성 원칙 도입) 보험회사·모집종사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판매권 유 시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95의3)
 - 적합성 원칙의 전제조건인 'Know-Your-Customer-Rule'의 도입을 위해 일반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계약의 목적 등을 서면 확인받도록 규정
-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최근 홈쇼핑 등을 이용한 보험판매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95의4)
 - 보험상품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외에,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 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법제화

마.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 (자산운용 제한규제 완화) 귀금속·골동품 및 서화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산운용규제를 삭제하고, 파생상품 투자 유형을 열거하는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폐지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105)
- (자산운용비율 규제 개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일반계정과 동일하게 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선(§106)
 - 더불어, 비상장주식 소유한도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외화표시 보험상품은

외화자산규제(30%)의 예외로 인정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회사 소유규제 개편) 자회사 소유에 대해 현행 승인·신고 제도를 유지하되, 보험회사의 자회사 승인기준 등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의 자의성을 배제(§115)

- 정부제출안에서는 자회사 소유규제를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제
- 보험회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바. 보험상품 정의 및 개발절차 합리화

□ (보험상품 정의 신설)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정의규정을 신설(§2 i)

- 보험상품의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보험업법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정의 규정에서 배제

□ (보험상품 개발절차 개편) 현행 제출상품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상품제도로 전환(§127)

- 신고상품 이외는 모두 자율상품화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율상품 기준과 신고상품기준을 이원화하여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소비자 보호를 절충
- 보험상품 개발 자율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자율규제 절차를 신설(§128의2)

□ (기초서류 변경권고 신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및 보험요율 산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에 변경권고권을 부여(§127의2)

- 다만, 자의적 변경권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변경권고는 반드시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서 하도록 규정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금융위는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시(§128의4)

사. 기타 개선 사항

- (상호협정 인가제도 개선) 보험회사가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체결하는 상호협정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로서 인가에 같음(\$125)
 -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와의 협의절차도 생략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보험상품 개발절차 개선에 따라 선임계리사에게 부여된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최종 확인·검증의무를 삭제(\$184)
 - 대신 기초서류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부과
- (손해사정사제도 개선) 현재 보험업법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구분 및 업무관련 보조인 조항의 법적 근거 명확화(\$186)
 - 시행규칙 개정 시 현행 4종 손해사정사 외에 통합형 자격제도를 추가할 예정
 - 또한 보험회사의 영위업무에 따라 손해사정사 고용의무를 차등 적용(\$185)
-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대상에 ①허위·과장광고, ②신고상품 미신고, ③기초서류 작성의무 위반, ④기초서류 변경·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및 ⑤소속 보험설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196)
 - 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209)

3. 보험업법 개정의 영향 및 개선 과제

- 금번 개정 법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업 진입규제 완화,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보험상품 개발절차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정책당국이 보다 중점을 둔 부분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대인 것으로 판단됨.
- 고객구분 신설,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일련의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는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해지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적 고려라고 하겠음.

- 다만, 이러한 규제들이 보험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보험영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광고의 필수포함사항의 경우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보험상품별 특성이나 고객의 이해도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더불어, 적합성의 원칙은 본래적으로 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도 그 적용대상과 방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개정요강에서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나, 적합성 원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 법률은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파생상품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제도개선은 보험회사에 보다 많은 영업자율성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원스톱서비스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국내 보험회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주춧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 발생원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영역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파생상품 총액한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율상품제도 도입은 상품개발제도를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하여 보험회사에게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창의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촐후감독 강화보다는

보험계리인력 및 전산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능력을 개선토록 하는 등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신고상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감독당국이 사후규제를 필요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에는 제도개선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향후 법률 개정 과제

□ <표 1>의 주요 개정사항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업법 개정작업이 길어진 기간만큼이나 그 개정사항 또한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 2006년 입법예고안에서는 업무영역, 소비자보호, 보험상품개발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2007년에는 판매채널규제와 자금이체, 유사보험감독 일원화 등을 보강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진입규제와 소비자보호, 판매채널 부문을 다수 보완한 것으로 나타남.

□ 최종 개정법률에서 삭제된 부분은 업권 간 그리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위 쟁점사항으로, 크게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의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금번 법률 개정에서 누락된 사항은 공제사업(共濟事業) 감독일원화, 보험회사에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금융위의 보험사기 자료제출요청권 등임.
- 이에 더하여, 최근 정책당국은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분야별 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법들이 보험업법과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먼저, 공제사업 감독일원화 문제의 경우 일반 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공제소비자 보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보험산업과의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사안임.

- 일반인 대상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입자 보호의 미흡과 민영보험회사와의 불공정경쟁 문제 등이 종종 지적되고 있으며,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업 사이에 그 적용법규를 달리하여 규제사각이나 규제차익을 야기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부합하지 않음.

- 특히, 공제사업 감독일원화는 최근의 농협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거시적이고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동 문제를 신속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금이체업무의 경우는 더 이상 특정산업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금융업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로 변모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보험산업에도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회사의 자금이체업무 부여에 대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은행업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 보험산업의 경우 자금이체를 위한 재원을 전액 위탁할 예정에 있고, 보험회사보다 리스크가 큰 서민금융기관까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진료여부 사실확인 요청권의 경우에도 부처 간의 이견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 국민이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관계부처의 의견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제공 자료가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고, 정보이용자가 국가 및 공공기관이므로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비추어,
 - 정보의 활용에 따른 국가적 손실방지와 정보 보호 간의 실질적인 비교형량을 통해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승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한 때임. KiRi

<표 1> 보험업법 주요 개정사항 추이

개정 사항		2006.10 입법예고안	2007.12 개정요강	2008.11 입법예고안	2010.6 개정법률
진입 규제	기초서류제출 완화	○	○	○	○
	허가받은 보험종목의 재보험 허가 간주	-	-	○	○
	전종목 영위 시 신설종목 허가 간주	-	-	○	○
	보험종목 추가시의 허가요건 완화	-	-	○	○
	업무위탁 시의 인적물적 시설 허가요건 완화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요건 강화	-	-	-	○
업무 영역	경영업무 체계 정비	○	○	○	○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	○	○	○
	자금이체업무 허용	-	○	○	×
판매 채널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제도 개선	○	○	○	○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	○	○	×
	설계사 등의 교육의무화	-	○	○	○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	○	○	○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로 일원화	-	○	○	○
	보험설계사등의 결격·취소요건 강화	-	-	○	○
	보험설계사등의 등록취소사유 강화	-	-	○	○
	법인대리점·법인중개사의 규제 강화	-	-	○	○
소비자 보호	보험상품 설명의무 신설	○	○	○	○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	○	○	○	○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	○	○	○
	적합성 원칙 도입	-	○	○	○
	보험회사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신설	-	-	-	○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대출 금지규정 신설	-	-	-	○
자산 운용 규제	부동산 자산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	○	○
	파생상품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	○	○	○
	외화표시 보험상품의 비율규제 제외	○	○	○	○
	자회사 소유규제 개편	○	○	○	○
	귀금속·공동품·서화의 소유금지 폐지	-	-	○	○
	비상장주식 자산운용규제 폐지	-	-	○	○
	소액특별계정에 대한 예외 적용	-	-	○	○
보험 상품	상품개발절차 합리화	○	○	○	○
	정의규정 신설	-	○	○	○
	기초서류 변경권고 신설	-	-	○	○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제도 도입	-	-	-	○
기타	보험사기 정의 규정 및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	○	○	○	×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 관련 규제 완화	○	○	○	○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	○	○	○
	공제사업 감독일원화	-	○	○	×
	자본감소 승인 완화	-	○	○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취소사유 추가	-	○	○	○
선임계리사의 의무 강화	-	-	○	○	

주: - 미반영, ○ 반영, × 삭제